

쟁점으로 떠오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논란

개정안
상정으로

여론 확산 계기 기대

80년대 들어서면서 기혼여성의 취업급증과 핵가족화로 가속화된 '폭발적인 보육요구'가 정부의 공공보육정책으로 일단 결실을 맺었으나 법제정 3년째로 들어선 <영유아보육법>의 구체적 운영을 둘러싸고 법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보사부 등 일부에서는 법이 제정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시각도 제기되나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운영상의 문제보다 모법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들어 개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일부 저소득층에만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수혜자 부담에 따라 적지않은 보육비를 부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보육료문제로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가정도 상당한 실정.

또한 보육과 직접 관련되는 보호자, 시설운영자, 보육교사들의 생생한 의견이 보육위원회를 통해 반영돼야 하므로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살릴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이 집중 거론되는 핵심 조항은 보육책임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장기적인 보육정책의 발전 원칙



◀ 법제정 3년째인 <영유아보육법> 운영을 둘러싸고 법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의 법개정 공청회는 관민, 학계를 떠나 보육법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열린 공유의 자리가 됐다.

에 입각해 '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사부측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맥락에서 보다 원활한 운영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탁연>이 최근 마련한 공청회에서 공공보육사업의 주무부처인 보사부도 제기되는 문제 핵심에는 동의하는 분위기. 그러나 '보육책임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은 현행대로 국가의 보충지원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고수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 개정안 상정을 작업중인 <지탁연>은 '보육책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공동책임(제1조)'

이라는 선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정내 양육을 강조하고 공적 재원부담을 피하는 정부 정책방침이라는 데 대한 이의제기에서 출발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축소하고 기본 보육책임을 가정에 뒤 보육시설 확충이 어렵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현행법을 '보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임을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국가와 수혜자 공동부담'으로 하자는 안이다.

둘째는 현행법이 보육서비스의 책임주체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책임구조로 하나(제3조) 중앙과 지방정

부의 관계가 모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는 '이 관계를 명확히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육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제4조) 만2년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것은 보육 관련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을 보장하고 이용자, 시설운영자, 보육교사의 참여가 가능한 구성을 첨가하자는 내용이다.